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
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

2014년 9월 24일

마포구의회 운영위원회
전문위원 김용범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4년 9월 11일(木), 이봉수의원 외 10인

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4년 9월 12일(金)

4. 검토의견

- 지방의회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되는 것으로,
-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마포구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, 풍수해·지진·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비능력을 확보함은 물론 안전한 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재난 안전관리 특별위원회」의 구성하고자 제안되었음,

- 최근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나,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등 근본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
- 또한, 서울 도심내 불특정지역에서 싱크홀(동공, 함몰 포함)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이미 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바, 우리구에서도 홍대 인근 롯데씨네마 영화관 천장이 무너져 관객이 대피하는 등 많은 사고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의 하나로 관내에 있는 호텔, 영화관, 공영주차장, 시장 등 공공 대형 건축물과 공공다중집합장소 및 쓰레기 소각장, 발전소, 빗물펌프장 등 기반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안전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“안전권” 의무를 이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.
- 요컨대 지진, 수해, 화재 및 대형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으로 인한 도시의 재난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,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의 적절한 사안으로 긍정적이라 사료됨.